

# 배우자 공동명의 안내문

보문 센트럴 아이파크 분양권 전매와 관련하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73조 제4항 각호의 전매행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전매 절차를 안내하오니 계약자님께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 명義변경 안내
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주택법 시행령」 제 73조 제 4항 각호의 경우 전매 제한 기간에도 전매행위가 가능하며, 동법 제 73조 제 4항 7호 (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)에 의한 명의변경입니다.</li> <li>아래 제출서류가 미비될 경우 배우자 공동명의 접수가 불가합니다.</li> <li>※ 명의변경 후 공급계약서 당일 불출 불가: 사업주체 날인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매 동의 접수 및 발급 (영업일 기준 약 14일 이상 소요)</li> <li>※ 배우자 공동명의 변경만 가능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 (제3자와 공동명의 변경 불가)</li> </ul>
전화문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분양사무소: 1600-5727 (주말 및 공휴일 휴무, 평일 10:00~11:30 / 13:00~17:00)</li> </ul>

## 명義변경 절차 및 서류 (※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)

순서 및 절차	주요내용	구비서류	
		양도인(증여인)	양수인(수증인)
① 증여계약서 작성 및 검인 (계약자 진행)	※ 양도인(증여인), 양수인(수증인) - (분양권) 증여계약서 작성 후 성북구청 부동산관리팀 방문하여 검인 (3층, 02-2241-4624) ※ 지자체 검인, 거래지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 등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.	1. 증여계약서 2. 아파트 공급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3. 신분증 4. 도장	1. 신분증 2. 도장 3.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)
② 전매사유 사전심사 및 전매동의서 제출 (건본주택방문)	1. 양도인(증여자), 양수인(수증자) 방문 [양도인(증여자) 대리인 신청 불가] 2. 전매 관련 구비서류 제출 3. 분양권 전매동의신청서 작성 4. 권리의무 승계 내역서 기재 및 날인	1. 공급계약서 원본 2. 검인된 증여계약서 원본 3. 가족관계증명서 1부 4. 주민등록표등본 2부 5.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[본인 발급용] 6-1.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[본인 발급용] [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/ LH 제출] 6-2.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[본인 발급용] [매도인,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/ 사업주체 제출] 7. 인감도장, 신분증	[필수서류] 1. 주민등록표등본 1부 2.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부 [본인 발급용] 3. 인감도장, 신분증  [배우자 분리세대 추가서류] 4. 주민등록표등본 1부 5. 가족관계증명서 1부  [대리인 방문시 추가서류] 6.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1부 [위임용] 7. 대리인의 신분증
③ 전매동의서 신청 및 발급	※ 신청자: 사업주체에서 신청 - 접수처: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	※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약 14일 이후 동의 여부 결정 통보	
④ 계약서 수령 (건본주택방문)	※ 전매동의서 발급 및 계약서 불출 - 수령 일자 개별 통보 예정	※ 계약서 보관증, 수령자의 신분증 - 공급계약서 대리인 수령은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가족만 가능	
⑤ 증여세 신고	※ 부부 사이에서는 10년간 6억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	※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-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	